용인특례시

제2026-161호

2026년 9월 2일(수)

용인시보

차 례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24호 [[입법예고]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6-2534호 [(행정예고)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용인시 공고 제2026-2535호 [(행정예고)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용인시 공고 제2026-2536호 [(행정예고)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용인시 공고 제2026-2537호 [(행정예고)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공 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526호 [공시송달공고[25수용0642, 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용인시 공고 제2026-2530호 [[공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공사완료]
- 용인시 공고 제2026-2532호 [용인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결정(안)-용인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우선구간)]

| 발행 : 용 인 시 | 편집 : 공 보 관 | 시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 031)6193-2065

용인시공고 제2026 -2524호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을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원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5호)

- ‘그 밖에 도로점용 허가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를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변경하여 보행안전원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 의무화(안 제5조)

- 보행안전원 배치기준을 의무화 및 구체화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 취약구간에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할 경우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2026. 9. 2. ~ 2026. 9. 2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로구조물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도로구조물과

○ 전　　화: 031-6193-2959

○ 팩　　스: 031-6193-3296

○ 전자메일: he1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을 임시보행로의 길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기존 '도로점용 허가 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를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나. 관급공사로만 한정한 문구를 수정하여 민간공사에도 보행안전원 배치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을 임시보행로 길이에 따라 구체화·의무화하며, 교차로 주변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 보행안전 취약구간에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나.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다.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예정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예정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도로점용 허가 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을 “도로를 점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 보도 점용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시공자는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행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구조물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팀장 직위・성명	보행자전거도로팀장 김 표
	주무관 성명・전화	조현은 (6193-329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도로점용 허가 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2.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도로를 점용하는 ---------- ② 제1항----------. 1.·2. (현행과 같음)
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 ① 시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주체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 2. 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제36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비	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 보도 점용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시공자는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행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관리청 3. 시 관내에서 도시철도·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	

관계법령 발췌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개정 2017. 11. 28., 2023. 10. 24.>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7.>

□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td><td colspan="6">2. 구 분</td></tr>
<tr><td></td><td></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존속기한 연장</td><td></td></tr>
<tr><td>3. 규제조문</td><td colspan="7">「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제5조</td></tr>
<tr><td>4.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7">제2부시장 건설국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보행자전거도로팀장 김표, 주무관 조현은</td></tr>
<tr><td>5. 근거(위임)법령 등</td><td colspan="7">「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로법」 제62조, 「도로법 시행령」 제58조</td></tr>
<tr><td>6. 규제 근거의 분류</td><td>개별법 위임 규제</td><td colspan="2">✓</td><td colspan="2">자치사무 규제</td><td colspan="2"></td></tr>
<tr><td>7.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td><td colspan="7">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을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td></tr>
<tr><td>8. 규제의 내용</td><td colspan="7">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도로점용 허가 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td><td>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td></tr>
<tr><td>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 ① 시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주체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경영하는 지</td><td>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 보도 점용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시공자는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행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보행안전원을 배치</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able><tr><td>방공기업
2. 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제36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비관리청
3. 시 관내에서 도시철도·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td><td>할 수 있다.</td></tr></table></td></tr>
<tr><td>9.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td><td>○ 피규제자 : 관내 도로 점용 공사 시공자 및 사업 주체
○ 이해관계자 : 시민, 건설 관련 협회·단체 등</td></tr>
<tr><td>10. 규제 신설강화의 장·단점</td><td><table><tr><td>장점</td><td>• 보행안전원 적용범위 명확화 및 구체화된 배치 기준 마련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td></tr><tr><td>단점</td><td>• 공사 시공자의 보행안전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공사비용 부담 일부 발생</td></tr></table></td></tr>
<tr><td>11.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td><td>○ 도로(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현장에 명확한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을 정립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td></tr>
<tr><td>12. 규제 정비계획</td><td>○ 해당없음</td></tr>
<tr><td>13. 규제존속기한 및 존속사유</td><td>○ 규제존속기한: 조례 폐지시까지
○ 존속사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 최근 도심지 내 보도 굴착 및 점용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대형 공사' 및 시 발주 '관급공사'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보도 점용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보행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음.
    - 보행 안전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공사 시행주체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적용범위, 보행안전원의 배치)을 부여하여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의 적정성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타당함.
    -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을 임시보행로 길이에 따라 인원을 차등 설정하고, 10m 미만 구간은 선별적으로 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함.
  ○ 국내 유사사례
    - 서울시는 보행안전원 의무 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행 중이며, 수원시의 경우 보행안전원 적용 범위를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규정하여 시행 중임.

3. 규제의 실효성
  ○ 규제의 순응도
    - 본 규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
    - 규제 적용 범위와 의무 배치 기준이 명확한 수치로 제시되어 있어 시공자의 사전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입법예고 기간 및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피규제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안내문 배부 및 사전 고지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예정임.
  ○ 규제의 집행 가능성
    - 도로점용허가 단계에서 보행안전원 배치 계획을 사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됨.

4. 규제 신설·강화의 장·단점
  ○ (장점) 보행 안전 사각지대 해소, 건설사업장 주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단점) 공사 시공자의 보행안전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공사비용 부담 일부 발생

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추진계획
    - '26. 8. : 자치법규 개정안 방침 결재
    - '26. 9. :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26. 10.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종합결론
    - 본 규제는 도로(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6. 그밖에 관련 참고사항
  ○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해당없음
  ○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용인시공고 제2026-2534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가사항을 초과하여 운행한 실적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선버스 준공영제 인가사항 초과 운행 시 운행 실적 인정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4항)

3. 행정규칙안: 별첨

4. 예고기간: 2026. 9. 2. ~ 2026. 9. 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2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대중교통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 전　　화: 031-6193-2294

○ 팩　　스: 031-6193-2299

○ 전자메일: min2021@korea.kr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행정규칙)명: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규 제 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된 운행실적이 인가사항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운행실적을 운행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팀장 직위・성명	공공버스팀장 박지혜
	주무관 성명・전화	이민지 (6193-229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운행실적의 확인 및 결정)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스템 등의 운행이력 자료를 토대로 운행실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행실적의 확인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운행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된 운행실적이 인가사항보다 부족한 경우 운송비용 감액정산 및 수입금손실액(결행, 중간회차 등에 따른 수입손실)에 대한 변상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된 운행실적이 인가사항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운행실적을 운행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생략)

용인시공고 제2026-2535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노선의 인정범위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모두로 확대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선 중복도 가점평가 시 준공영제 운행 노선을 포함하여 유사노선 인정 대상 범위 확대(안 별표 5)

3. 행정규칙안: 별첨

4. 예고기간: 2026. 9. 2. ~ 2026. 9. 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2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대중교통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 전　　화: 031-6193-2294

○ 팩　　스: 031-6193-2299

○ 전자메일: min2021@korea.kr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행정규칙)명: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규 제 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팀장 직위 · 성명	공공버스팀장 박지혜
	주무관 성명 · 전화	이민지 (6193-2294)

[별표 5]

가점(제9조 관련)

○ 노선 중복도(+5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노선과 정류소가 중복되는 유사노선을 운행 중인 사업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나) 유사노선의 인정은 사업신청자가 민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행하는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중 1개 노선에만 적용하며, 관련 증빙자료(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해당 노선의 인가 및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식 : 5 × (중복 정류소의 수/총 정류소의 수)

※ 중복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정류소와 중복되는 유사노선의 정류소 수

※ 총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총 정류소의 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5] 가점(제9조 관련) ○ 노선 중복도(+5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노선과 정류소가 중복되는 유사노선을 운행 중인 사업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나) 유사노선의 인정은 사업신청자가 **민영제로** 운행하는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중 1개 노선에만 적용하며, 관련 증빙자료(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해당 노선의 인가 및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식 : 5 × (중복 정류소의 수/총 정류소의 수) ※ 중복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정류소와 중복되는 유사노선의 정류소 수 ※ 총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총 정류소의 수	[별표5] 가점(제9조 관련) ○ 노선 중복도(+5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노선과 정류소가 중복되는 유사노선을 운행 중인 사업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나) 유사노선의 인정은 사업신청자가 **민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행하는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중 1개 노선에만 적용하며, 관련 증빙자료(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해당 노선의 인가 및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식 : 5 × (중복 정류소의 수/총 정류소의 수) ※ 중복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정류소와 중복되는 유사노선의 정류소 수 ※ 총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총 정류소의 수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생략)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교통국

소 관 부 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면허 및 등록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2 ~ 31	(생략)	(생략)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노선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용인시공고 제2026-2536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비스평가항목 중 교통사고지수 산정기준을 道 공공관리제 산정기준과 통일하여 일관성·형평성 확보

나. 단일 차량 운행 노선이 많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 특성을 반영한 대수별 교통사고지수 산정기준의 예외 신설로 평가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지수 산출 시 경상자수 가중치 조정(0.5 → 0.3)

나. 연평균 가동대수 2대 미만 노선에 대한 교통사고지수 산정기준 예외 신설

(안 별표 6)

3. 행정규칙안: 별첨

4. **예고기간:** 2026. 9. 2. ~ 2026. 9. 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2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대중교통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 전 화: 031-6193-2294

○ 팩 스: 031-6193-2299

○ 전자메일: min2021@korea.kr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행정규칙)명: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규 제 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팀장 직위・성명	공공버스팀장 박지혜
	주무관 성명・전화	이민지 (6193-2294)

[별표 6]

교통사고지수(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Ⅱ. 사고 관리노력 (교통사고)	Ⅱ-1	10	연간

○ 교통사고지수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유도하여 버스 이용객의 안전성 향상 도모
평가대상	○ 평가기간 중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상노선 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이 50%를 초과하는 사고
평가방법	○ 연평균가동대당 교통사고지수 평가 - 교통사고지수: 평가기간 중 운행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 50%를 초과하는 사고 건당 인명피해수준 - 가동대수: 평가기간 누적 실제 운행차량대수 - 연평균가동대수: 가동대수/평가일수 ※ 단, 연평균가동대수가 2대 미만인 경우 2대로 산정한다. ○ 교통사고지수 산출식 $\text{사망자수} + \frac{(0.7\times\text{중상자수}) + (0.3\times\text{경상자수})}{\text{연평균가동대수}}$
평가점수 산정	○ 교통사고지수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교통사고지수	0.00	0.00 초과 ~0.20 이하	0.20 초과 ~0.40 이하	0.40 초과 ~0.60 미만	0.60 이상
배 점	10점	7점	5점	3점	0점

조사방법	○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발급받아 조사
특이사항	○ 평가기간 중 재판 등으로 과실률(피해/가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평가에서 제외(사고내역 확정연도 평가에 반영)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
<td>
[별표6]
교통사고지수(제4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사 항</th></tr>
<tr><td>평가목적</td><td>○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유도하여 버스 이용객의 안전성 향상 도모</td></tr>
<tr><td>평가대상</td><td>○ 평가기간 중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상노선 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이 50%를 초과하는 사고</td></tr>
<tr><td>평가방법</td><td>○ 연평균가동대당 교통사고지수 평가
- 교통사고지수: 평가기간 중 운행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 50%를 초과하는 사고 건당 인명피해수준
- 가동대수: 평가기간 누적 실제 운행차량대수
- 연평균가동대수: 가동대수/평가일수
<u><신 설></u>

○ 교통사고지수 산출식
$\text{사망자수} + \frac{(0.7\times\text{중상자수}) + \underline{(0.5\times\text{경상자수})}}{\text{연평균가동대수}}$</td></tr>
<tr><td>평가점수 산정</td><td>
<table>
<tr><th>구 분</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h>D등급</th><th>E등급</th></tr>
<tr><td>교통사고지수</td><td>0.00</td><td>0.00 초과 ~0.20 이하</td><td>0.20 초과 ~0.40 이하</td><td>0.40 초과 ~0.60 미만</td><td>0.60 이상</td></tr>
<tr><td>배 점</td><td>10점</td><td>7점</td><td>5점</td><td>3점</td><td>0점</td></tr>
</table>
○ 교통사고지수별 배점</td></tr>
<tr><td>조사방법</td><td>○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발급받아 조사</td></tr>
<tr><td>특이사항</td><td>○ 평가기간 중 재판 등으로 과실률(피해/가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평가에서 제외 (사고내역 확정연도 평가에 반영)</td></tr>
</table>
</td>
<td>
[별표6]
교통사고지수(제4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사 항</th></tr>
<tr><td>평가목적</td><td>○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유도하여 버스 이용객의 안전성 향상 도모</td></tr>
<tr><td>평가대상</td><td>○ 평가기간 중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상노선 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이 50%를 초과하는 사고</td></tr>
<tr><td>평가방법</td><td>○ 연평균가동대당 교통사고지수 평가
- 교통사고지수: 평가기간 중 운행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 50%를 초과하는 사고 건당 인명피해수준
- 가동대수: 평가기간 누적 실제 운행차량대수
- 연평균가동대수: 가동대수/평가일수
<u>※ 단, 연평균 가동대수가 2대 미만인 경우 2대로 산정한다.</u>
○ 교통사고지수 산출식
$\text{사망자수} + \frac{(0.7\times\text{중상자수}) + \underline{(0.3\times\text{경상자수})}}{\text{연평균가동대수}}$</td></tr>
<tr><td>평가점수 산정</td><td>
<table>
<tr><th>구 분</th><th>A등급</th><th>B등급</th><th>C등급</th><th>D등급</th><th>E등급</th></tr>
<tr><td>교통사고지수</td><td>0.00</td><td>0.00 초과 ~0.20 이하</td><td>0.20 초과 ~0.40 이하</td><td>0.40 초과 ~0.60 미만</td><td>0.60 이상</td></tr>
<tr><td>배 점</td><td>10점</td><td>7점</td><td>5점</td><td>3점</td><td>0점</td></tr>
</table>
○ 교통사고지수별 배점</td></tr>
<tr><td>조사방법</td><td>○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발급받아 조사</td></tr>
<tr><td>특이사항</td><td>○ 평가기간 중 재판 등으로 과실률(피해/가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평가에서 제외 (사고내역 확정연도 평가에 반영)</td></tr>
</table>
</td>
</tr>
</table>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교통국

소 관 부 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면허 및 등록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2 ~ 31	(생략)	(생략)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선입찰 조건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평가결과 반영
2. 성과이윤 차등 지급
3. 운송원가 차감

용인시공고 제2026-2537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료 충전 인정 시간대와 연료비 기준단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운행종료 후 연료 충전 여건 및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료 충전 인정 시간 확대(안 별표 4)

- 당일까지 → 익일 오전 3시까지

나. 연료비 기준단가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4)

- 조달청 공공유류 할인단가 제외 삭제

3. 행정규칙안: 별첨

4. 예고기간: 2026. 9. 2. ~ 2026. 9. 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2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대중교통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 전　　화: 031-6193-2294

○ 팩　　스: 031-6193-2299

○ 전자메일: min2021@korea.kr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행정규칙)명: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규 제 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팀장 직위・성명	공공버스팀장 박지혜
	주무관 성명・전화	이민지 (6193-2294)

[별표 4]

연료비 세부 정산방법(제8조제3항 관련)

○ 연료비 분기정산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행한 차량의 실제 연료 사용량과 연료비 기준단가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연료 충전시기는 당일 운행 및 충전을 원칙으로 하되, 익일 오전 3시까지 충전은 당일 충전으로 인정하며, 미운행일에 연료를 충전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정산한다.

- 정산 적용 : 실제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실제 연료 사용량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에서 추출된 실제 운행차량의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예비차량의 정산 적용 : 노선 운행거리 ÷ 월 단위 노선별 평균연비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경유) 오피넷 홈페이지 게재된 일별 용인시 평균 경유(원/리터) 단가

(CNG)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홈페이지 게재된 CNG(원/N㎥) 연료비 단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연료비 세부 정산방법(제8조제3항 관련) ○ 연료비 분기정산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행한 차량의 실제 연료 사용량과 연료비 기준단가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연료 충전시기는 당일 운행 및 충전이 원칙이며,** 미운행일에 연료를 충전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정산한다. - 정산 적용 : 실제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실제 연료 사용량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에서 추출된 실제 운행차량의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 할인단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예비차량의 정산 적용 : 노선 운행거리 ÷ 월 단위 노선별 평균연비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경유) 오피넷 홈페이지 게재된 일별 용인시 평균 경유(원/리터) 단가 (CNG)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홈페이지 게재된 CNG(원/Nm³) 연료비 단가 ※ **할인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에 할인율을 곱한 단가로 경유 연료에만 적용함** **- 할인율 : 조달청에서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공동구매」에 따른 할인율**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별표4] 연료비 세부 정산방법(제8조제3항 관련) ○ 연료비 분기정산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행한 차량의 실제 연료 사용량과 연료비 기준단가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연료 충전시기는 당일 운행 및 충전을 원칙으로 하되, **익일 오전 3시까지 충전은 당일 충전으로 인정하며,** 미운행일에 연료를 충전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정산한다. - 정산 적용 : 실제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실제 연료 사용량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에서 추출된 실제 운행차량의 연료 사용량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예비차량의 정산 적용 : 노선 운행거리 ÷ 월 단위 노선별 평균연비 × 연료비 기준단가 ※ 표준 연료비 단가 (경유) 오피넷 홈페이지 게재된 일별 용인시 평균 경유(원/리터) 단가 (CNG)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홈페이지 게재된 CNG(원/Nm³) 연료비 단가 <삭 제>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생략)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교통국

소 관 부 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면허 및 등록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2 ~ 31	(생략)	(생략)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 및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의 규모는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하되, 시장이 지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와 예상운송수입금을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투명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운송수입금, 운송비용 정산, 운행실적 사업계획, 서비스 평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정지원 시 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용인시 공고 제2026 - 25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기도가 시행하는「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4. 9.**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6. 9. 2.

용 인 시 장

1. 사 업 명 : 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526-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6. 4. 9.)
5. 공고 기간 : 2026. 9. 2. ~ 2026. 9. 16.(초일 불산입 14일간)
6. 공시송달 대상자 : 별도 붙임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용인시 생태하천과 (☎031-6193-2455)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번 호	성 명	송 달 주 소	비 고
1	㈜효산우드 건축자재	경기도 광주시 봉골길 94-4 (문형동)	
2	경주김씨 병사공파종중	용인시 모현면 매산리 565	
3	이상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124 (보정동, 수지구청역롯데캐슬하이브엘) 104동 1306호	
4	이완재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333번길 24-9	
5	이윤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175	
6	김경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매산리 582-4	
7	미복구		
8	이우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0가길 2	
9	이준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마로17번길 7, 102-202(청덕동)	
10	전주이씨근령군파 광수공종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12	

용인시 고시 제2026-2530호

공 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

용 인 시 장

▣ 실시계획 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사

└ 명칭 : 도시계획시설 증축 공사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 성명 : 용인시장(자원순환과)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마. 사업규모 : 5,394㎡

용인시 공고 제2026-2532호

공 고

1.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9-8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

용 인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 간선시설(도수시설:도수관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A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도수관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370-2번지 일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7-11번지 일원	-	2.009	14,931	-	-

■ 단위시설(도수시설:가압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	수도공급설비(도수시설:가압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9-85번지 일원	-	증) 34,959	34,959	-	-

2)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사유
A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도수관로)	• 도수관로 신설 - 연장 : 2.009Km - 면적 : 14,931㎡	• 금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수관로 신설
B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가압장)	• 통합가압장 신설 - 면적 : 34,959㎡	• 금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통합가압장 신설

▣ **공람기간** : 2026. 9. 3. ~ 2026. 9. 17.

▣ **공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031-6193-2383)

용인시청 반도체국가산단과(☏ 031-6193-3908)

▣ **공람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계도서

▣ **의견제출 방법**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